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입주계약)제4항 신설에 따라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시 농림축산물 제조업종·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와 세관장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농림축산물 제조업종·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입주계약을 신청할 경우 세관장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제출(안 제3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전협이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전협이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전협이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한한다)
4. 5. (생략)	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